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. 9. 28 선고 2021가단1198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한별

담당변호사 김성민, 김혜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호

변 론 종 결 2022. 7. 13.

판 결 선 고 2022. 9. 28.

주 문

1. 가.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0. 3. 16.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. 3. 16. 접수 제44675호로 마친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0. 4. C에게 30,000,000원을, 2020. 1. 6. 24,800,000원을 각각 대출하였다.

나. C과 피고는 의왕시 D에 있는 E아파트 F동 G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를 1/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, C은 2020. 3. 16. 피고에게 그의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16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위 지분 이전의 원인이 되는 증여를 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.

다. 2021. 9. 13.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는 60,916,319원(= 원금 55,640,688원 + 이자 5,275,631원)이다.

[인정근거: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

가. 피보전채권

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C에게 합계 54,800,000원 및 이자에 상당하는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, 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해당 여부

1)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, 달리 C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. 그렇다면 C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C의 유일한 책임재산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C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

원고 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C은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이혼 시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, 또한 C 채무 5,14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을 이전받았다. C과

피고는 2020. 4. 8.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2020. 7. 20.경 협의이혼이 확정되었다.

피고는 대신 변제해준 5,14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외에 C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.

따라서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을 정당하게 이전받은 것이다.

3) 을 제1, 7,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과 피고가 2020. 4. 8.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20. 7. 20.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,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피고로 정한 사실, 2020. 5. 4.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월 1,244,894원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한편, ‘협의이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는다’는 내용의 재산포기각서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0. 4. 20.에서야 작성된 점(을 제9호증),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위한 증여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였고,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점,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서 C이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점(을 제7호증,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에 자녀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), 피고가 C에게서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라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명목의 이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

부동산 1/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영림

(별지)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가. 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

경기도 의왕시 D에 있는 E아파트 F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의왕시 H

나. 건물내역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콘크리트지붕 15층

공동주택(아파트)

제1층 내지 제14층 509.1338㎡

제15층 367.8101㎡

다.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지번변경

2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가. 소재지번

경기도 의왕시 D

나. 지목

대

다. 면적

77067m²

라.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2021년5월12일 등기

3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가. 접수

2019년4월25일

나. 건물번호

제12층 G호

다. 건물내역

철근콘크리트구조

84.9404m²

4. 대지권의 표시

가. 대지권종류

1 소유권대지권

나. 대지권비율

77067분의 73.9665

다.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2021년5월12일 대지권

2021년5월12일 등기

- 끝 -

